##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0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 : 민형배·서삼석·강은미

이개호 · 송영길 · 박광온

윤재갑・소병철・이정문

이은주 · 김진표 · 이용빈

주철현 · 신정훈 · 송갑석

김민철 • 윤영덕 • 조오석

이형석 · 이학영 · 김승남

김원이 · 양향자 · 이병훈

서동용 · 김회재 의원

(269]

### 제안이유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의 범위에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

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도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둘째, 이 법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보상 등을 신청하 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그 유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명예회 복과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 니다.

넷째,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등 역사적 사건의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정신 계승사업 등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있는 5·18기념재단은 법률로 필요한 비용지원근거가 없어 국가보조금으로 사업비만 지원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5.18기념재단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경우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의 정의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과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1호의2 및 제8조).

- 다. 이 법에 따른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지원을 하기로 함(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 라. 국가가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치료프 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함(안 제21조의2 신설).
-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 법률 제 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를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유족의 범위 등)"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다.

-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 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
- 4.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

-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간 지정
  - 2의2.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 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 제21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관련자 중 성 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상속인
  -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사람
  -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라한다)로 결정된 사람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자로 본다.
- 제3조(5·18기념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하게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을 이 법에 따른 '재단'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제1조(목적)
18일을 전후한 <u>5·18민주화운동</u>	<u>5</u> ·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의 관련자와
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u>입은 사람과</u>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	
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	<u>.</u>
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등) <신	제2조 <u>(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u>
<u>설&gt;</u>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
	회에서 심사·결정된 사람을 말
	<u>한다.</u>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 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 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 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 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 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을 유족으로 본다.

② (생략)

-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저 지원위원회) ① (생 략)
  - ②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신 설>

2. (생략)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
4. 5·18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
직된 사람
<u>②</u> <u>5·</u>
18민주화운동 관련자
<u>.</u>
<u>.</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세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
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신청기
<u>간 지정</u>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6. (생략)

③ • ④ (생 략)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삭 제>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 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 야 하다.

등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신 설>

2의2. 관련자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체적·정 신적 회복 지원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 음)

>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 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치 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관련자

<신 설>

중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 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 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8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청구할 수 있는 사람
  -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28조제3항의청구기간이도과한 경우에도불구하고이 법시행일부터3년내에 보상 청구를할수있다.

-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

   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